

외국환거래법규상 자본거래 신고의 시점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 해설

I. 개요

외국환거래는 크게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등의 경상거래와 금전대차,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등의 자본거래로 구분되며, 각각의 거래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와 이에 따른 결제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관련 법체계〉

구분		거래	
		경상	자본
행위	원인	관세법대외무역법 적용	외국환거래법 적용
	결제	외국환거래법 적용	외국환거래법 적용

즉, 자본거래는 원인행위와 결제행위가 결합된 거래로써,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결제행위(지급 및 수령 행위)를 중심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이고 결제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뜻 : 헌법재판소, 2005.6.30. 2003헌바 114).

따라서, 자본거래의 원인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자본거래의 결제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동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는 2009. 2.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 당사자인 A사는 자본거래의 신고 종기(終期)에 대한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그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II. 질의 요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물품 등을 유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라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문의

○ 부언하자면, 외국환거래법규상 자본거래의 신고 기한은 종전에는 원인행위(질의거래의 경우, 물품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해야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물품임대차계약 완료 이후 그 대가의 결제(지급·수령)행위 이전에도 자본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IV. 기재부 유권해석(질의회신)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거래에 해당함.

○ 자본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지급 및 수령의 절차(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V. 기재부 유권해석에 대한 해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의 신고 기한에 대하여 종전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의 외환실무 관행을 변경하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의 신고

기한은 분명히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자본거래의 결제 이전에 그 자본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事前) 신고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받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실무에 따르면, 사전신고와 반대 개념의 사후(事後)신고가 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1)에 따른 것으로서, 간혹 은행담당자들은 동 기재부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행위 완료이후 결제행위 이전의 자본거래 신고’에 대해 사후신고의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해석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실무관행입니다.

참고로, 보증 유형의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신고를 사전 신고로써 받아주어야 할 것이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사후 신고의 범주로 해석해서 자본거래 신고를 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PwC관세법인이 기재부 유권해석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것으로서, 본 사건의 case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관세조사 또는 외환검사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PwC관세법인 변문태(mun-tae.byun@kr.pwc.com) 박사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1)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③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의 장(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